추가약정서(자동기한연장용)(역구매론 구매기업용) 개정대비표

1. 주요 개정내용

현 행	개 정	비고
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귀 행과 20 년 월 일 체결한“ 여신거래약정서” 에따라 약정한 동 대출금의 여신한도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판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은행이 정한 최장기간(10 년) 내에서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되지 아니할 수 있다. <생략>	주식회사 하나은행 앞 귀 행과 20 년 월 일 체결한“ 여신거래약정서” 에따라 약정한 동 대출금의 여신한도기한 종료일 전까지 은행 또는 채무자 중 어느 일방의 서면에 의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판매기업과 은행이 정한 기한으로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한다. 이 경우 자동연장이라 함은 별도의 한도거래 기간연장용 거래추가약정서를 작성하지 않고 <삭제> 자동연장하는 것을 말한다. 다만, 다음과 같은 경우는 자동연장처리되지 아니할 수 있다. <좌동>	- 최장기간 조항 삭제

2. 개정시행일 : 2020년 11월 06일

3. 기 거래 고객에 대한 적용 : 적용